

# 대구예술대학교 입학전형 공정관리 대책 위원회 규정

(개정 2008.11.05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9.06.20. 교무위원회/자구수정)

**제1조 (명칭)** 본 위원회는 대구예술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입학전형공정관리 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
**제2조 (목적)** 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3조 (구성)**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에 의하여 임명한다.

1.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.(개정일자 2008.11.5)
2. 위원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4조 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시부정방지대책의 수립 및 시행
2. 입학전형업무담당자 및 시설의 관리·통제
3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심사
4. 대학입학전형의 사전·중간·사후 자체감사 실시
5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**제5조 (임기)**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한 후임위원의 임기는 결원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**제6조 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부위원장 또는 총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7조 (회의)** ① 회의는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**제8조 (회의록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한다.

② 제1항의 회의록에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과 간사는 서명·날인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결과보고)**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0조 (간사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위원장의 제청으로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11조 (비밀유지)**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**부 칙**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6 월 20일부터 시행한다.